

	다문화가정학생지원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2. 6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생권익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가정,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.

제3조(차별금지)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생권, 학습권,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 받지 않으며, 대학 구성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.

제4조(대학의 책임) ①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은 교무입학처로 한다.

② 대학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개선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소외 방지 및 교육복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다.

③ 대학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생활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④ 대학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지는 다양한 언어, 문화적 배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조(교수·학습) ① 대학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충분한 학과(전공)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·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일반학생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.

② 대학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수·학습 등에 있어서 시설 등 적합한 편의를 제공한다.

제6조(상담 및 취업지도)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 상담과 직업도, 취업알선, 고용 등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제7조(편의시설) 대학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원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관련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